

장기요양기관 평가 예정통보서 (정기)

1. 기관명 : 밀알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(1-46130-00008)
 2. 급여종류 : 입소시설10인미만
 3. 평가예정일 : 2021년 12월 20일
다만, 사정에 따라 연장되거나,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
 4. 자료제출 및 평가범위
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60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
 - 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제3조제2항에 의한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.

2021년 12월 14일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

※ 문의 : 호남제주지역본부(전화 : 062-250-0320)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7조제1항제3호의7에 따라 평가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
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대상이며,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
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